

# 정 관

(2019)



# 100. 정 관

1. 정 관 .....	100
--------------	-----

# 정 관

1984. 3. 2. 제정  
1989. 6.15. 개정  
1990.12.21. 개정  
1992.11.18. 개정  
1993.11.26. 개정  
1996.11.27. 개정  
1999. 4.15. 개정  
2000. 2.23. 개정  
2004. 6.22. 개정  
2007. 7.25. 개정  
2010. 7.23. 개정  
2011. 7.25. 개정  
2011.12.21. 개정  
2012.12.13. 개정  
2013. 3.15. 개정  
2014.11.22. 개정  
2015.12.15. 개정  
2017.12.13. 개정  
2018.11.24. 개정  
2019. 3.12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조 (목 적)

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심장질환자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진료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명 칭)

이 법인의 명칭은 "한국심장재단" (이하 법인이라 한다) 이라 칭한다.

### 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에 두며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시·도에 설치할 수 있다.

### 제 4조 (사 업)

① 이 법인은 제 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심장질환자 및 기타 질병환자의 진료지원사업
2. 심장병의 예방, 연구, 교육에 관한 사업
3. 북한에 대한 의료 및 인도적 지원 사업

4.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
  5. 기타 이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- ② 이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매년도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5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)

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## 제 2 장 자산 및 회계

#### 제 6조 (재 정)

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

1. 이 법인의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, 기관의 지원금
2. 독지가의 찬조금 또는 기부금
3. 기금의 과실
4. 부동산 임대업에 의한 수익금
5. 기타 수입금

#### 제 7조 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## 제 8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당시나 설립 후 이 법인이 취득 또는 기증 받은 재산으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④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 제 1 호, 제 2 호와 같다.

#### 제 9조 (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)

-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법인의 정관이 특히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, 취득재산의 종류, 수량 및 가격을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**제10조 (예산 및 결산)**

- ①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 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이 법인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**

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 3 장 임 원****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

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11인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
3. 감사 2인

**제13조 (임원의 임기)**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3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한다.

**제14조 (임원의 선임방법 등)**

-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자격이 상실된다.
  1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
 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4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  5.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인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.
- ⑥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

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,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시,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법인 등에 속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-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, 3회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#### 제17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자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
#### 제18조 (대표권의 제한)

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.

#### 제19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.
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.
6.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.

#### 제20조 (자문위원)

-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4 장 이 사 회

### 제21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.
2.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.
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.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.
5.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.
6. 관계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.
7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중요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.

### 제22조 (위원회)

- 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23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 제24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25조 (이사회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  2.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.
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#### 제 26조(회의록의 공개)

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에 의거하여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수 익 사 업

#### 제27조 (수익사업의 종류)

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다.

#### 제28조 (수익의 처분 및 관리)

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.

## 제 6 장 사 무 처

#### 제29조 (사무처)

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
#### 제30조 (직 원)

-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총장과 직원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## 제 7 장 정 관 변경 및 해 산

#### 제31조 (정관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32조 (해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



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**
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
## 제 8 장 보 칙

**제34조 (시행세칙)**

이 정관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

**제35조 (공고사항 및 방법)**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한다.

## 부 칙

**제 1조 (시행일)**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 2조 (기본재산)**

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표 1, 2 와 같다.